

충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2008. 4. 30(수)

# 조례안건 등 심사보고서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홍진옥 의원발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물정책과장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상수도과장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하수시설 과장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이종갑 의원발의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경제과장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 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지역개발 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터 신설) 의견청취의 건	"

產業建設委員會

#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2008. 4. 15	2008 4. 15	2008 4. 21	2008 4. 21	총진옥 의원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조례안	"	"	"	"	물정책 과장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 영 조례안	"	"	"	"	상수도 과장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	"	"	하수시설 과장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008 2. 26	2008 2. 27	2008 3. 4	2008 3.4(보류)	이종갑 의원
			2008 4. 21	2008 4. 21	"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2008. 4. 15	2008 4. 15	2008 4. 21	2008 4. 21	경제과장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 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	"	"	"	지역개발 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안(하나웰빙센 터 신설)의견청취의 건	"	"	"	"	"

## 2. 제안설명요지

### 가.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으로 흡수하여 하수로 처리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므로써 이에 맞도록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 **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검사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함

#### **라.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오수·분뇨”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무주택 영세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생계에 보탬을 주고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함

#### **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충주시 목행동 490번지의 공동물류센터의 일부를 충주수퍼마켓 협동조합에 무상 사용허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사.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에 계획중이었던 나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아.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견청취의 건**

수안보 사문리에 계획 중인 하나웰빙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 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시책의 수립,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등 책무를 가짐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는 경제과에, 읍·면·동에는 민원실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함

### **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시장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음

-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규모가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명칭을 정하고 그 직제를 정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대상을 정함

#### **라.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
- 하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

#### **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관리동 전기료,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료, 승강기전기료, 보일러 전기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무상사용하여 왔던 목행동 물류센터 ‘나’, ‘다’동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허가하도록 하되,
- 법에서 정한 내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나동의 A,B,C)은 사용료(17,639,600원)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 **사.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나라골프장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골프장으로 조성되지 않는 계획관리지역 70,718m<sup>2</sup>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 증가되는 면적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아.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견청취의 건**

하나웰빙센터 사업계획면적 67,065m<sup>2</sup> 중 관리지역 26,192m<sup>2</sup>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농림지역 40,873m<sup>2</sup>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는 것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사업자의 책무나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 소비자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한 심의를 하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이 조례의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부칙에서 『충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 본 조례는 시민을 위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의 제정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어 정부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
- 종전 하수와 오수·분뇨가 나뉘어져 하수는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어 왔지만
-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의하여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만 본 조례로 정하는 것

#### **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기관의 운영과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바
- 종전의 조례인 『충주시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조례의 명칭을 법에서 정한 용어대로 제명을 바꾸고, 법에서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의 하나로서 조례안 제2조 조직, 조례안 제3조 업무의 범위, 조례안 제4조에서 검사 대상의 물을 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라.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와 분뇨를 『하수도법』으로 통합시킨 뜻은 그 동안 하수(下水)와 오수(汚水)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처리시설로써 정화처리할 물질로 보았고
-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 하수처리구역을 정하여 구역 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는 이러한 『하수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위임조례

## **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연수주공 2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는 연간 세대당 26,000 원 정도가 부과되어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연간 2천 2백만원이 소요
- 공동전기료의 다·소를 떠나 본 조례의 경우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줄 경우 형평의 문제 가 있음
- 작게는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761세대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크게는

영구임대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3천3백여 수급자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사료됨

### **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고 봄 다만, 관내 38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의 상인들이 영세하여 자생력이 없다는 이유와 연합회의 운영 상황이 같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실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사용료 부담분이 있는지 또는 이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써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 됨

### **사.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 본 골프장의 위치조건은 북충주 IC와 2~3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탄금호와 칠금관광지 일원에 개발되고 있는 수상레포츠 특구사업과 어우러져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골프장 조성 전·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 **아.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 견청취의 건**

- 하나웰빙센터는 전문병원, 유기농연구소, 운동요법센터, 재활센터 등이 건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
- 사업부진의 이유가 하나의료재단의 다른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밀려 당분간 사업추진이 지난할 것이라는 동향도 있는 바 기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관련부서에서 조속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 질의답변 요지**

### **가.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 ▶ 질의 : 읍면동에 소비자보호 센터를 두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 답변 : 상당히 복잡함.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 **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질의 : 단독주택지역에서 개를 기르는것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넓힐 수는 없는지
- 답변 : 다음 회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종합 조정할 계획임

### **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 질의 : 없음

#### 라.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질의 :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300m로 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답변 : 처리구역을 300m 이내로 한다는 의미임

#### 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질의 : 없음

#### 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질의 : 나, 다동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 충주 비생산 품목은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구역을 나누어서 유·무상 사용토록 하게 됨

▶ 질의 : 조합원들이 176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 함. 앞으로 조합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답변 : 결정되면 검토해서 운영비 전시판매비를 지출할 계획

#### 사.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 견청취의 건

▶ 질의 : 없음

#### 아.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 견청취의 건

▶ 질의 :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과장님의 보는 견해는 불안하지

않은지? 사업이 늘어지는 이유는 무언지

○답변 : 자금이 문제임. 사업자가 SPC 10위내 시공자를 선정 해야... 거의 협상단계에 와 있음

## 6. 심사결과

### 가.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 수정가결

(조례안 제11조 삭제 / 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명문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함)

### 나.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다.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라.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규모를 46m<sup>2</sup> 이하로 한정하고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시설물 중 제1호 '관리동의 전기료' 삭제)

**바. 목행동 공동물류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가결**

**사.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 의견서 채택

**아.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견청취의 건**

: 의견서 채택

붙임 1.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충주시 영구임대 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1부

3. 도시관리계획(나라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1부

4. 도시관리계획(하나 웰빙센터)의견청취의 건 의견서 1부

##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내지 제36조를 제11조 내지 제35조로 한다.

###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10조 (생략) <u>제11조(소비자단체 등의 육성지원)</u> ①(생략) ②(생략) <u>제12조 ~ 제36조</u>	제1조 ~ 제10조 (제정안과 같음) <u>&lt;삭 제&gt;</u> <u>제11조 ~ 제35조</u>

##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관내” 다음에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를 삽입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u>관내</u>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p> <p><u>1. 관리동 전기료</u></p> <p><u>2. ~ 5.</u></p>	<p>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u>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u>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한다.</p> <p><u>&lt;삭제&gt;</u></p> <p><u>1. ~ 4.</u></p>

# 의 견 서

□ 의 안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나라골프장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928호
- 상정일자 : 2008. 4. 21
- 의결일자 : 2008. 4. 21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 의 견

- 최근 우리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다수 이루어 지고 있는 바 이는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레져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면이 있음
- 타 지역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나라CC도 북충주 IC인근에 위치하여 탄금호와 칠금관광지 일원의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렇지만 골프장사업은 사업전·후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008. 4.

산업건설위원장

# 의 견 서

□ 의 안 명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하나웰빙센터)  
의 건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929호
- 상정일자 : 2008. 4. 21
- 의결일자 : 2008. 4.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의 견

- 하나웰빙센터는 우리지역, 특히 수안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임
-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산 좋고 물 좋은 수안보 지역에 관광과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그렇지만 본 하나웰빙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면적의 산림훼손이 진행될 것인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양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음

2008. 4.

산업건설위원장